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57
----------	-----

2016년 2월 25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5년 12월 22일, 김현아 의원 외 9명
- 나. 회부일자 : 2015년 12월 2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6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16년 2월 2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김현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하위 「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·운영 관리지침」에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두고 있으나,
- 현행 조례에는 지하역사에 대한 유지기준만 있고 철도차량에 대한 규정이 없어,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「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·운행 관리지침」을 반영하여 대중교통차량의 미세먼지, 이산화탄소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
「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·운행 관리지침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붙임
- 2) 비용추계 비대상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선희)

가.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과 「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·운행 관리지침」에 정해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함)」 제5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본 조례에 지하철 역사 등의 실내공간에 대해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유지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에 관한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.
-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¹⁾은 법 제9조의2제3항 및 환경부 고시인 「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·운행 관리지침(이하 “관리지침”이라 함)」에 규정되어 있는데,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권고기준이 포함되어 있음.
- 개정조례안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차량내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이라 판단됨.
- 개정조례안에서는 관리지침에 정해진 권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별표4를

1) 유지기준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만, 권고기준은 강제성이 없음

신설하고자 하는 것인데, 이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,

- 별표 신설보다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, 권고기준은 관리지침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·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.

관 계 법 령

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

제5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) ③시·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·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·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제9조의2(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)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(이하 "관리지침"이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「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」

제8조(실내공기질 권고기준) 운행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〔별표 1〕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(제8조 관련)

1. 이산화탄소

대중교통차량	권고기준		비 고
	비혼잡시간대	혼잡시간대	
도시철도	2,000ppm 이하	2,500ppm 이하	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으로 평가
철도, 시외버스	2,000ppm 이하	2,500ppm 이하	

비고 1. “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”이란 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영주체별 소속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 측정된 값의 평균값을 말한다. 이하 같다.

2.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07시 30분부터 09시 30분까지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를,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 또는 성수기를 말하며,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한다. 이하 같다.

2. 미세먼지

대중교통차량	권고기준	비 고
도시철도	200 $\mu\text{g}/\text{m}^3$	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으로 평가
철도, 시외버스	150 $\mu\text{g}/\text{m}^3$	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

- 별표 신설보다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, 권고기준은 관리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·보완함.

8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957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년 2월 25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별표 신설보다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, 권고기준은 관리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·보완하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안 제16조제3항, 안 제16조제4항, 안 별표 4를 각각 삭제함.
-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를 신설함.
(제16조의2)

3. 참고사항: 생략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6조제3항, 안 제16조제4항, 안 별표4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)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(이하 “관리지침”이라 한다)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							
<p>제16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) ① ~ ② (생략) 〈신설〉</p>	<p>제16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시장은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9조의2 제3항에 의한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4와 같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	<p>제16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〈삭제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삭제〉</p> <p><u>제16조의2(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)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(이하 “관리지침”이라 한다)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</u> <u>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							
<p>[별표 1~3] (생략) 〈신설〉</p>	<p>[별표 1~3] (현행과 같음) <u>[별표 4]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(제16조 관련)</u> 1. 이산화탄소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중교통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권고기준</td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고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차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혼잡시간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혼잡시간대</td> </tr> </table>	대중교통	권고기준		비고	차량	비혼잡시간대	혼잡시간대	<p>[별표 1~3] (개정안과 같음) 〈삭제〉</p>
대중교통	권고기준		비고						
차량	비혼잡시간대	혼잡시간대							

도시철도	2,000ppm 이하	2,500ppm 이하	노선 1회 운행 시
철도 시외버스	2,000ppm 이하	2,500ppm 이하	평균값으로 평가

비고 1. “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” 이란 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영주체 별 소속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 측정값의 평균값을 말한다. 이하 같다.

2.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07시 30분부터 09시 30분까지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를,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 또는 성수기를 말하며, 비혼잡 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한다. 이하 같다.

2. 미세먼지

대중교통 차량	권고기준	비 고
도시철도	200 μ g/m ³	노선 1회 운행 시
철도 시외버스	150 μ g/m ³	평균값으로 평가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)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(이하 “관리지침”이라 한다)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제16조의2(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)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(이하 “관리지침”이라 한다)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